

동국대학교 김교수 성추행 사건관련 보도자료

가해자 : 김OO(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정교수)

1999년 8월 일본 조치대학교(동경 소재)에 교환교수로 1년 체류일정으로 파견.

사건 당시 노년사회학회 일정차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홋카이도 방문.

피해자 : M (일본인, 김교수의 제자)

1998년부터 1999년까지 4학기동안 유학생자격으로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수학하고 2000년 2월 졸업.

사건당시 일본 홋카이도에 거주하며 직장생활 중.

1. 사건에 대해서

1. 사건의 발생(~2000. 7. 5.)

2000년 7월 5일 학회일정차 홋카이도에 들렀던 김교수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제자 M씨를 만나 저녁을 같이하게 되었다. 1차로 대중음식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과 술을 함께 했는데, 1차를 M이 계산하자, 김교수는 자신이 2차를 사겠다고 제안, 둘은 다시 대중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미 1차에서 과하게 마신 터라, 이때부터 김교수는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화 중 M의 손, 어깨, 등을 어루만지고 머리를 가볍게 감싸안기도 하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2차를 마치고 나서, 김교수는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둘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래 한국을 부르던 김교수는 M씨에게 거의 껴안은 상태의 춤을 강요하였고, 몇 차례 M씨가 거부하자 강제로 손으로 끌어 당겨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M씨는 바로 뛰어나갔고, 김교수는 혼자 숙소로 돌아갔다.

2. 사건 경과(2000. 7. 6 ~ 7. 29)

사건 다음날, 김교수가 피해자 M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

"어제 밤에는 많이 술 취한 모양이다. 일어나는데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다. 혹시 실례가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혹시 니가 실망하고 있을까봐 전화를 했다." M이 아무 말도 않고 냉정하게 반응하자 김교수는 직접 M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어제 일 때문에 저는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M에게 김교수는 "미안하다. 사랑하는 제자를 실망시키다니...용서해주면 안될까,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와 뉘우침보다는 사건을 얼버무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지야 하는 책임을 무마하려는 의도의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김교수는 M에게 편지를 발송하기도 하고, 부인과 자신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인정과 진실한 사과라기보다는 피해자인 M을 구슬리 사건을 무

마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일 뿐이었다. 김교수는 M과의 통화에서 “술도 끊었고, 학생들을 더욱 아껴줄 것”이라거나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 했다는 등 사건의 해결과는 동떨어진 말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내가 교수를 그만둬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고 교수직까지 놓는다는 건 좀 그렇잖아?”라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오던 김교수는 M과의 여러 번의 통화, 재일교 포이자 M의 후배인 K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7월 11일, K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노래방에 가자고 그랬어... 만지기도 한 것 같아.”라며 일부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였고, 7월 18일 K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같이 부르스를 추고 M의 손을 잡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 포옹은 한 것 같애. 그리고 키스를 할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라며 상당부분 자신의 추행혐의를 인정하였다. 이는 같은 날, M과의 통화에서 “부르스를 춘 건 기억이 나. 포옹도 한 것 같다.”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교수는 자신의 성추행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일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피해자는 한국에 있는 동국대 사회학과 학과장과 전년도 학생회장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3. 한국에서의 진행상황(2000. 7. 29 ~ 11.14)

7월 29일, 학과장 강정구 교수와 전년도 학생회장 박경태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메일을 접수하였다. 박경태는 당시 성폭력상담소 주간간사로 일하던 선배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본에서 사건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피해자 M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한편 학과장 강정구 교수는 급히 사회학과 교수회를 소집하여 사건이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교수를 한국으로 소환한 이후 사직서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어 8월 1일, 김교수는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였고, 귀국 즉시 학과장에게 사직서 제출의향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실은 곧 박경태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학생들에게 통보되었고, 다음날 학생들은 김교수와 면담을 갖고 사직서 제출용기에 감사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사직서제출과 내주 학생들과의 공개면담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8월 8일 비대위와 가진 2차 민담에서 김교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의 사직서 반환 사실을 밝히면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성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특히 법조계에서 일하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받은 자문내용을 공개하며 법률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승선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겠다고 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사건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학생총회를 갖고 김교수와 여러 차례 면담, 전화를 통해 사건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교수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러한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김교수는 여러 가지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8월 2일 학생들과의 1차 면담에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로 말하였으나, 며칠 후 이 말을 뒤집고 사직서를 반환하였으며, 나중에는 자신은 결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으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건초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면서도 이후 비상대책위가 중재안을 마련하자 정직정도의 징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료교수들에 대한 음해를 시도하며 학과교수들간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진상조사위에 출석하기로 한 학과장을 연구실로 불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며 칼로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결국, 10월 9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사건은 공론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사회학과 학생들과 비상대책위는 대자보 부착과 피켓팅 등을 진행하였고, 사건내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비상대책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건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과 동국대 비구니회, 석림회 등이 함께 한 공동대책위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학교법인에서는 자체 진상조사 및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고, 결국 11월 14일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교원으로서 부도덕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김교수에 대한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4. 해임이후부터 복직까지의 상황(2000. 11. 15 ~ 2001. 8.)

김교수에 대한 해임결정으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으나 곧 김교수의 가까운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과장이었던 홍두승 교수가 탄원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김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교심위)에 자신에 대한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하였고, 재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제단이사회를 거쳐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측에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측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사업학교법 제55(복무)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위반"을 근거로 2001년 4월 9일 김교수에 대한 해임결정을 확정지었으나 교심위는 2001년 6월 19일 본 사건에 대해 다시 김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1개월 정직으로 감경시키고 이를 2001년 4월 9일자로 소급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교수는 지난 5월 9일자로 실질적으로 복직된 상태이다.

특히, 교심위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징계는 가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었고, 이러한 교심위의 판결은 자칫 앞으로 성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5. 복직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2001.08~)

이에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학내 교수 성폭력을 적절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동국대 인권위원회(준)'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김교수 복직반대 운동을 전개해왔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교수 복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내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와 공동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김교수는 원래 2001년 2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2001년 6월로 소급해서 복직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가휴직을 내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60일 병가휴직이 끝난 11월부터 그는 출근을 하였고, 학교측에, 학생들과 어떤 마찰이 있더라도 수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02년 1학기에 사회학과 학부 수업 3개를 맡게 되었으며, 가정교육 대학원 수업, 행정 대학원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들은 방학 전과 개강 후, 김교수 수업 거부 운동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학내 선전전을 진행하여 마침내 김교수에게 배당된 학부 수업 3개 모두 폐강되었다.

또한 2002년 2월, 교수 성폭력이 한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 여성운동 단위들이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는 3월 15일 부터 김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II.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복직 판결근거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사립학교법 제55(복무)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위반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곧 김 교수는 '교심위'를 통해 해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991년 7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된 '교심위'는 현재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교심위'의 결정은 교원특별법 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처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교심위' 지시 사항을 지킬 수밖에 없다. 결국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임된 교수에 대해 '교심위'가 면죄부를 제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심위' 김성덕 상임위원은 "김 교수 복직은 한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거쳐 이루어진 일"이라며 "일본에 있는 M씨의 잔술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1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일한 점, 여성단체 표창을 받은 점 등에 근거해 해임은 너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복직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심위'가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12162-563호, 2001년6월19일)에 따르면 학교가 해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증거가 없다. 채증법칙위반, 둘째 김교수가 제자 김 아무개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셋째 M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넷째 M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교심위'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추행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추행의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수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①15년간 한번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②199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로상 수상 ③사회와 대학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④동국대 교수 201명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 4월 9일 해임을 정직1개월로 변경"

<2001년 8월 1일자 오마이뉴스 보도문 중에서>

2. 교심위의 위상과 판결문의 효력

1991년 7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된 '교심위'는 현재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교심위'의 결정은 교원특별법 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처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교심위' 지시 사항을 지킬 수밖에 없다.

III. 김교수의 복직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의미

1. 김익기 교수 복직판결의 문제점(동국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위원회 성명서 중)

2000년 7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김교수가 일본인 졸업생 M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 및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김교수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김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재심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임 대신 정직 1개월의 감경처분 명령을 학교재단측에 내렸다.

'재심위'의 감경처분 명령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첫째, 김교수가 15년간 성실히 근무를 한 점,
- 둘째, 김교수가 모 여성단체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한 경력,
- 셋째, 동료교수 201명의 탄원서,
- 넷째, 성추행으로 교수가 해임된 전례가 없는 점,

다섯째, 본인이 사회와 대학에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재심위'의 결정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5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것'은 교원이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으로 감경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여성단체로부터 받은 공로패'는 사회조사사업을 도와준 동국대 사회학과에 대한 '감사패'로 김 교수 개인에 대한 표창이 아닐뿐더러, 여성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성추행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의 동료교수 201명의 탄원서'의 가치가 그 동안 해임요구를 해왔던 수많은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학습권과 생활권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성추행에 대해서 정황상 인정되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의 경감 명령을 내린 '재심위'의 결정은 성폭력 범죄를 성직 자율권을 침해하는 인권문제,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이한 사고를 보여준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면죄부를 주어 성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김익기 교수 복직판결의 사회적 의미

김익기 교수에 대한 재심위의 복직판결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 갖는 평균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성폭력은 단지 개인과 개인간에 벌어지는 아주 사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성폭력이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성폭력에 대해 적용되는 관습과 제도라는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재심위는 성폭력이 남성과 여성, 교수와 제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 등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이 개인이 가지는 성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문제라는 것, 오히려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회적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문제는 개인들의 사적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현재까지 교수가 성추행, 성폭력 문제로 해임된 전례는 없다. 김익기 교수를 복직시키라는 교심위의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 판결이 하나의 선례로서 공식화된다는 것은 '성추행 교수=1개월 정직'이라는 등식의 법적 정당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김교수 개인에 대한 도덕적 철회의 차원뿐만 아니라, 성폭력 일반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를 포함한다. 즉, 이 판결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표준적인 판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1개월 정직'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IV. 우리는 요구한다.

1. 피해자 M씨의 지금 심경과 요구사항

2000년7월5일날 나는 믿고 존경하던 김 익기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같이 춤추는 것을 강요했던 김 익기 교수는 춤추는 척 하면서 내 배와 가슴, 그리고 아랫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내 팔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내가 저항을 했는데도 김 교수는 두 번이나 키스를 했고 히까지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내 이에 그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2000년7월5일에 김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벌써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20개월 동안 나는 성추행 자체는 물론 더 많은 상처를 김 교수한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도 많이 실망하게 되었지요.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않고 오히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배를 끼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5일날 나는 믿고 존경하던 김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같이 춤추는 것을 강요했던 김 교수는 춤추는 척 하면서 내 배와 가슴, 그리고 아랫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내 팔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저항을 했는데도 두 번이나 키스를 했고 히를 집어넣으려고도 했습니다. 나는 그 감각을 잊을 수 없는 채 20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랑 들어서 술을 마시는 여자가 나쁘다, 들어서 노래방을 간 게 잘못이다 등 하지만 그 당시에 김 교수는 내가 정말 믿었던 교수였고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실마 김 교수같이 평소애 그렇게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 제자에게 성추행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 했던 것입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남자랑 단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는 아버지나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충격을 줬고 그 일을 사실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여자는 해프다 등 잘못 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할 경향이 있지요.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평소애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아니고 풀어서 일본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듣고 더 많은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나는 교수가 자살이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다음날 내 직장으로 찾아와 일을 하고있는 나에게 평개만 대고 너무 화가 나 말도 없이 있는 나에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나쁜 일은 가급적 잊어버리고 잘 쉬는 교수가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기미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김 교수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 뿐더러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해 나에게 더 크고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1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사건 때문에 3번 일본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도 하지 못 하고 일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김 교수는 그렇게 사랑하던 학생들에게 폐를 주고도 아직 교수로서 봉급을 받고 살고 있지요.

동국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해임결정에 대해서 김 교수가 제 심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 교육부 산하에서 구성된 재심위원회는 "성추행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라고 성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1개월 정직으로 감형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재심위원회는, 김 교수가 15년 동안 문제없이 교수직을 완수해왔다는 것, 1997년에 어느 이성단체에서 감사패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는 것, 201명의 교수를 서명, 그리고 "사회와 대학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립대학교는 자치권으로서 인사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용되면 김 교수가 재심위원회제도를 악용하는 일로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심위원회는 "성추행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라고 하면서 해임을 1개월 정직으로 감형했습니다. 이것은 재심위원회가 성추행분쟁을 가벼운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판단입니다. 성추행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심위원회가 감형 이유로 든 이유들은 다 내가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하고 작은 이유들이고 그러한 이유로 감형한다는 것은 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대학교 측이 재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뜻이 아무 대책도 없는 것도 불렀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학과 학생들이 수강할 전공과목이 김 교수 수업을 빼 버리면 충분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중심인 학생을 무시하는 일이지요.

나는 처음 2000년 7월 29일에 한국으로 베일을 보냈을 때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사건당시 나에게 자신이 15년 동안 교수로서 열심히 해 왔고 학생들에게 신용도 받고 앞으로 더 더욱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변명만 계속해 더 심한 상처를 준 김 교수를 전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화를 나눠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어야 할 일인지, 교수가 스스로 책임을 지야 할 것인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왜 내 일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김 교수가 유임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충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수가 학생에게 돈을 붙이고 충을 줄 것을 강요했다는 것은 충분한 성추행이 됩니다.

나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가 기억을 못할 만큼 술에 취해 학생을 성추행하면 그 교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2. 동국대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위원회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성폭력’을 ‘경범죄’로 취급하는가!

2000년 7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가 일본인 졸업생 M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 및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K교수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K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재심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임 대신 정직 1개월의 감경처분 명령을 학교재단측에 내렸다.

‘재심위’의 감경처분 명령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K교수가 15년간 성실히 근무를 한 점,
둘째, K교수가 모 여성단체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한 경력,
셋째, 동료교수 201명의 탄원서,
넷째, 성추행으로 교수가 해임된 전례가 없는 점,
다섯째, 본인이 사회와 대학에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재심위’의 결정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5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것’은 교원이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으로 감경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여성단체로부터 받은 공로패’는 사회조사사업을 도와준 동국대 사회학과에 대한 ‘감사패’로 K교수 개인에 대한 표창이 아닐뿐더러, 여성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성추행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의 동료교수 201명의 탄원서’의 가치가 그 동안 해임요구를 해왔던 수많은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학습권과 생활권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성추행에 대해서 정황상 인정되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의 경감 명령을 내린 ‘재심위’의 결정은 성폭력 범죄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인권문제,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지않고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이한 사고를 보여준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면죄부를 주어 성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재심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내 성폭력 제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할 것
- ‘재심위’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심의를 거쳐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
- ‘동국대학교 학교당국’은 즉각 ‘K교수’를 파면시킬 것
- ‘K교수’는 공개 사죄할 것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동국대 인권위원회(준)

3.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김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이유(각 부분에 대한 오류발견)

1. 사건 개요

2000년 7월 5일 김익기 교수는 학회일로 들른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동국대 사회학과에 유학했던 제자 M씨를 만나 저녁 식사 후 가진 술자리에서 성폭력(강제 키스 시도, 포옹 등)을 저지름. 성폭력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 (그러나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음.)

2. 책임 회피를 위한 발 바꾸기

사건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후배 K씨가 김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김교수는 "포옹은 한 것 같애.. 그리고 키스를 할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M가 그걸 거부해가지고 방을 나가버렸어.."라고 발뺌. 그러나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김교수가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자 피해자 M씨는 사회학과 학과장과 전년도 사회학과 학생회장(박경태)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건을 알리고 공식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 사회학과 교수회가 메일을 접수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 즉시 귀국하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사표를 제출하고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과 교수들이 사퇴를 중용했다고 하면서 사표 반복.

3. 사건 은폐, 동료 교수와 학생 협박 - 강정구 교수 흡기 위협 사건

사회학과 교수, 학생 간담회에서 당시 학과장 강정구 교수가 강경발언을 했다고 전해들은 김교수는 다음날 자신의 연구실에서 강교수를 흡기 위협. 학교 징계위원회(2000년 9월 5일)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며 강교수는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음. 학교 징계위에서 말 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사건 발생즉시 강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회학과 교수회에서는 여러 정황상 이 사건은 사실이라고 판단. 김교수는 일주일 후 "이 모든 사건이 강교수의 시나리오"라고 주장.

김교수의 동료교수들이 김교수의 복직을 청원하는 서명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회학과 조은 교수에게 변조한 여자 목소리로 두 차례 피전화통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공포분위기를 조성. 전화한 사람은 추후 김교수의 가까운 인척으로 밝혀짐.

4.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 - 성폭력 교수 구명?

동국학원은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2000년 11월 김교수를 해임. 그러나 김교수는 동국대 교수와 일부 사회학자들의 서명을 받아 복직단원. 김교수는 학교가 부당하게 해임시킨 것처럼 복직단원을 받음. 교육 인적 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해임징계를 1개월 정식으로 낮추라는 명령이 내려와 현재 복직된 상태임.

5. 학생들은 법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공소시효 이틀 전 김교수의 복직결정을 알게되고 변호사 없이 형사 고발함. 김교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됨. 피해자는 대질신문에 응하지 못했음. 피해자가 대질 신문에 응하지 못한 이유는 심리적 불안과 다시

1)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한석정입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마음 한구석에 묵혀둔 일 하나를 오늘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자를 수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동국대 사회학과 김익기전교수의 복직 운동에 제가 서명해 주었던 사실을, 늦었지만 중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까 하여, 글을 씁니다.

몇 개월전 학과의 선배교수 한 분이 김씨의 복직에 관한 서명용지를 들고 제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별 논의없이 간단히 서명에 응해주었습니다. 신문 어느 귀퉁이에서 읽은 적이 있다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바빠 집필을 하고 있던 중인지라 서명을 하고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지요. 마음 한구석에 성추행사실을 가버이 여기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래 몇 개월간 제 가슴속에 작은 가시로 자랄 줄 몰랐습니다.

후일 김씨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수에게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짓을 범하고, 이것이 문제되자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등 등 갖은 악랄한 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복직운동을 김씨의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벌였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일부 진보인사와 여성학 전공자를 포함) 응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21세기의 열린 교육을 주창하는 교육부조차 김씨의 손을 들었다는 것을, 여러 믿을만한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성과 소신을 희생하고 연줄을 좇아 휘둘린 사회학계 일부의 이 추태에 제가 가담했다니, 참으로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며칠전 김씨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명에 참가해서 고맙다는, 수백명의 교수들의 서명 덕분에 복직이 이루어졌다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자의 추행에 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정그러운 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서명이 그의 복직에 기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요즘 무책임하게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되어 문초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서명을 감행하던 유신정권이나 전두환체제가 지나간 마당에, 이제 서명은 안전한 시대의 별로 잃을 것 없는 간단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심코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흉악한 일을 덮어두고, 정의를 구현하느라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고, 나아가 자신의 명예를 감아먹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제 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뒤 늦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1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날에
동아대 사회학과 한석정 드림

2) [시명철회]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

동국대 k교수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다시 의견을 냅니다.

1) 지난 9월 8일 독자게시판에 이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복직하는 k교수가 성찰해야 할 세가지 점을 말한바 있습니다. " 우선 자신의 연격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인간중시적 배려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김교수를 만나게 되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았다”는 정신적 피해 때문, 김교수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

◎ 저희는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7월 5일 발생한 직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4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3년동안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와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의 경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해결하려 했으나 사건을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학교수의 성폭력은 정직 1개월로 용인될 수 있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김교수의 행태는 대학내 성폭력이 왜 은폐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학연과 조직등을 이용하여 은폐, 조작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교수에게 사회학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수님들의 교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권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 교수의 비리와 부정의 자유까지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교수의 교권까지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수님들의 자제분이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다니고 있다면, 이러한 교수에게 강의를 받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

1.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제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할 것
2. '재심위'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 심의를 기치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
3. '동국대학교 학교당국'은 즉각 '김교수'를 파면시킬 것
4. '김교수'는 공개 사과할 것

4. 김교수 구명 서명때 서명을 하셨다가 철회하신 분들의 편지

*동아대 사회학과 한석정 교수님¹⁾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님²⁾